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

의안번호	531
------	-----

제출년월일 : 2005. 8.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장
(예산담당관)

1. 제안 이유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국가가 설립한 부산교통공단이 2006년 1월 1일부터 우리 시로 이관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부산교통공사를 설립하여, 부산교통권역 내외 교통소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과 역세권 개발사업 등 사업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7조원으로 하되, 시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함에 있어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에 의하여 부산교통공단으로 부터 공사가 포괄승계한 재산을 시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함(안 제3조, 안 부칙 제3조).
- 이사의 정수는 15인 이내로 하고,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하며, 임원의 임기는 3년, 연임가능하도록 함(안 제4조).
- 공사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하도록 함(안 제5조).

-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나,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됨(안 제6조).
- 도시철도의 운임은 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고, 도시철도의 이용자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경우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 2년 이내의 단기차입과 연도 내의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단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경우의 비용부담 범위를 규정함(안 제11조).
-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사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공사는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시장은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시장의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도록 함(안 제15조).
- 공사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 함(안 부칙 제2조).

▷ 구성 : 10인 이내의 위원, 위원장 - 행정부시장

▷ 위원회의 업무

- 정관 작성 및 시장 인가
- 2006년 1월 1일까지 설립동기 완료

▷ 사무 인계 및 해산

- 설립동기 후 : 지체 없이 공사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
- 사무인계 후 : 해산 또는 해임·해촉

○ 최초 공사의 사장 임명을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통기획과장 및 도시철도업무담당사무관이 되도록 함.(안 부칙 제4조).

▷ 간사 : 예산담당관 → 교통기획과장

▷ 서기 : 공기업업무담당사무관 → 도시철도업무담당사무관

○ 공사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공사의 예산은 종전 부산교통공단이 편성하여 부산교통공단이사회 의결로 확정하고,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부산교통공단의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사가 승계하도록 함(안 부칙 제5조·부칙 제6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결과(2005.7.20~8.9) : 의견 불임 참조

라. 공청회개최결과 : 해당사항없음

부산광역시 조례 제 호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안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치하여, 부산교통권역 내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생활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의 건설 및 운영
2. 「도시철도법」 제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역세권 개발사업
3. 「주차장법」 제12조의3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의 설치·관리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기존 버스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버스운송사업(단, 마을버스운송사업 기준에 의함)
5.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수송을 위한 환승시설의 건설·운영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관련 사업
6. 도시철도 운임징수와 관련한 전자지급수단에 관한 사업
7. 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수익사업 등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제3조(자본금)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7조원으로 하되,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제4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정수는 15인 이내로 한다.

- ②사장 및 감사는 부산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면하되, 사장은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 ③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며,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의 자격요건은 정관으로 정한다.
- ④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⑥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공사를 대표할 다른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 제6조(이사회) ①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외 참여 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외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운임) ①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임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가 대행한다.

②공사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여객이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운임을 징수할 수 있다.

③공사는 도시철도의 운임 및 부가운임의 징수 절차와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10조(차입) ①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공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1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하여는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 가격의 차액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재산의 무상사용) ①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시장은 공사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가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의 위탁) 시장은 「부산교통공단법 제지법률」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시가 인수한 부산교통공단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상환업무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장의 공인비치) 공사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원리금 상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부산광역시 공인 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 ①시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법 제82조 및 영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은 시장으로 보며,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 부칙 제2조 · 부칙 제4조 및 부칙 제5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설립준비) ①시장은 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산교통공사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다.

- ③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청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설립위원회는 2006년 1월 1일까지 공사의 설립등기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⑤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⑥설립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보고, 설립위원은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 ⑦설립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자본금 출처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출처는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전의 부산교통공단으로부터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사가 포괄승계한 것을 시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제4조(사장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 「부산광역시 공사·공단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최초 공사 사장을 임명할 위한 사장추천위원회의 간사는 교통기획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철도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5조(예산편성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공사의 예산은 중전의 부산교통공단이 편성하여 부산교통공단이사회외 의결로 확정하되, 그 절차는 법 제65조 및 영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중전의 부산교통공단의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되는 공사가 승계한다.

입법예고 결과

○ 예고기간 : 2005. 7. 20. ~ 8. 9.(20일간)

○ 예고방법 : 부산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 입법예고 결과

입법예고안	제출외견		반영여부
	제출자	외견	
(조례명칭) 부산광역시부산교통공사 설치조례	강한규 부산교통 공단노동 조합	○“부산광역시지하철설치공사 조례”로 명칭 변경 -여론조사에서 선호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각종 공사로 인식되어질 우려가 있고, 기존 부산교통공단과 유사 하여 차별성 없으므로 타 시도 명칭(지하철, 도시철도)과 유사하게 지하철공사로 변경 요함	• 미반영 -여론조사결과는 오랫동안 “지하철”이라는 용어가 익숙하 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며, -부산교통공사는 시의회, 시 민단체, 전문가, 관련기관 등 의 의견수렴 등 종합판단한 결과이고, 향후 대중교통의 중 추적 역할이 요구되므로 “부 산교통공사”가 적절함
	윤예준 구수진 이양호 김상국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부산광역시교통공사설치조례” 로 변경 - 부산물 반출 사용하므로 용어단순화 필요	• 일부반영 - “부산교통공사 설치 조례” 로 조례명칭 변경
	부산교통 공단	○“부산교통공사설치조례”로 변경 - 조례명 간결화	• 반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 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이 의하여 부산광역시부산교 통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를 설립하여 경영합리화 를 도모하고, 안전하고 신 속한 대중교통 수단을 제 공함으로써 시민 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강한규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부산광역시지하철공사” 로 명칭 변경(강한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를 “시민참여가 보장된”(강한 규), “시민참여를 토대로” (민주노동당)로 “신속한”을 “쾌적한”으로 변경 -경영합리화가 목적이 된 경 우 공공성 훼손 우려 -시민참여 보장으로 투명성 확보	• 일부반영 -명칭은 위 사유로 미반영 -“경영합리화”는 삭제 - “신속한” 삭제
	윤영삼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를 삭제, 시민이용자 참여근거 제시	• 일부반영 -“경영합리화”는 삭제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반영여부
	제출자	의견	
	윤예준 구수진 이양호 김상국	○"대중교통수단"을 "교통수단"으로 변경 -일반택시운송사업까지 포함 필요	· 미반영 -지하철도 대중교통수단의 하나이며 향후 대중교통의 중추적 역할이 필요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포함은 공사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함
	부산참여 자치시민 연대	○목적에 광역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자율성 및 창의성에 관한 사항 추가 -양산선 고려 -공사의 자율성과 창의성 고려	· 일부반영 -광역교통체계는 부산교통권 역으로 하여 목적에 포함됨 -자율성과 창의성은 중요하나 경영이념 등을 통하여 반영될 사항이지 조제상에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부적절
제4조(자본금) ①공사의 수권자본금은 12조원으로 하고 부산광역시(이하"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강한규	○자본금 12조원 과다함	· 반영 - 7조원
제5조(정관) ①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9. 공표에 관한 사항 10. 사재발행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강한규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부산교통 공단노동 조합	○제1항 추가 각종 위원회설치에 관한 사항, 요금인상과 관련한 사항, 취업규칙 및 규정작성과 변경에 관한 사항(본건은 민노당 제 외), 점영공시에 관한 사항 -투명경영과 시민안전확보 를 각종 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요금인상과 관련한 사항은 시민의 일상생활이나 불가 인상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관에 명시 ○제2항을 수정 "공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와 직접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시장은 시의회와 승인을 거쳐 인가를 하여야 한다 -정관이 쉽게 변경되지 못하도록 개정절차 강화	· 미반영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 규정 되어 있는 사항으로 제5조를 삭제함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반영여부
	제출자	의견	
제7조(임원) ①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 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강한규	○ 제1항의 임원에 "감사"삭제 - 지금까지 내부감사가 역할을 못하고 정치적으로 낙하산으로 인사되는 빌미 제공	· 미반영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감사를 포함하고 있음
	강한규 윤예환 구수진 이양호 김상국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 제2항의 사장·이사(위촉직 이사제외)의 임기 연임 규정 삭제 - 임명권자의 정치적 농간배어, 기업경영의 생동감유발	· 미반영 - 제2항의 임원 연임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59조에도 연임제한 규정이 없으며, 유능한 임원의 확보를 위하여 연임은 가능하도록 규정할 필요 있음
	부산광역시민연대	○ 상임이사 공개채용 원칙추가 - 전문성 확보	· 미반영 - 채용방법은 정관 또는 규정으로 정함이 바람직함
제8조(사장) ①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강한규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 "시장"이 임명한다"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로 변경 - 대외기관외 의견 반영필요	· 미반영 - 시장의 임명은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시 시의회에서 위원 3인을 추천받아 구성·운영하기 때문에 별도 시의회 의결 불요
	부산교통공단	○ 제3항 중 "사장이 사고가 있어"를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 반영
제9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과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한다. ②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이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정관에서 규정한 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업무를 분장한다.	윤예환 구수진 이양호 김상국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 이사 중 1/3 이상을 시민이 임명토록 변경 - 경영의 투명성 확보	· 미반영 -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음
	강한규	○ 제4항 삭제 - 공사경영의 권한을 하부로 이양하여 책임경영 도모	· 반영
	윤영삼	○ 시민이용자의 참여를 명문화	· 미반영 - 이사의 수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필요 시 정관으로 규정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 제9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 이사는 시민대표를 포함하여 포함하여 12인 이내 구성, 시민참여 이사의 수는 100분의 30 이상, 시민대표의 이사 임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함 - 투명한 지휘결정행위를 위하여 경영진에 전문가와 시민대표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 미반영 - 이사의 수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필요 시 정관으로 규정 가능함

입법 예고안	제출 의견		반영 여부
	제출자	의견	
	부산참여 자치시민 연대	○ 제1항에 위촉직은 NGO 에서 추천하는 지역전문가 및 학동가로 위촉하는 규정 추가 - 투명성 확보 및 시민참여 확대	• 미반영 - 필요시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제14조(직원의 임면) ①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부산참여 자치시민 연대	○ 개방직 확대 규정 추가 - 전문성 강화	• 미반영 - 정관 등을 통하여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제14조 삭제
제16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도시철도 건설·운영 2. 도시철도의 역세권외 개발, 주차장의 건설·운영 기타 공사의 설립목적과 관련되는 개발사업 3. 도시철도 관련 국내·외 기관의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 등 도시철도 운영 관련사업 및 감리사업 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전세 버스운송사업 및 대중교통 체계 개선 관련사업 5. 교육훈련사업 등 운영 수지 개선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6. ~8.(생략) ② 공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시장회 승인을 얻어 그 법인의 자본금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 할 수 있다.	강한규 윤예준 구수진 이양호 김상국 민루노동당 부산시당 강한규	○ 제1호 중 "도시철도 건설· 운영"을 "도시철도 운영"으로 변경 - 건설은 부산시가 맡고 공사 는 운영만 전담하는 것이 효 율적	• 미반영 - 현재 교통공단의 건설인력의 적정처리 문제 등 현 여건상 건설·운영 분리불가 - 현재 건설 중인 공사마무리 이후 반영점토
	강한규	○ 제2호 중 "건설", "개발사업" 삭제 - 건설과 관련한 사항은 다 른 주체가 맡는 것이 바람 직 ○ 제3호 중 "감리사업" 삭제 - 건설과 관련한 사항은 다른 주체가 맡는 것이 바람직	• 미반영 - 사업의 다각화와 확충으로 시민편익증진과 수지개선 제고
	윤영삼	○ 제4호 중 "대중교통체계개선 관련사업" 외에는 삭제 - 도시철도사업에만 전념하 는 것이 바람직	• 반영
	부산교통 공단	○ 제4호 삭제	• 일부반영 - 향후 대중교통의 중추적 역할의 요구에 대비(버스 준 공영제 등) 사업의 다각화와 확충으로 시민편익증진과 수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기존 버스 운송사업자의 노선과 증폭되지 아니하는 버스운송사업만 하도록 규정
	부산교통 공단	○ 도시철도 건설·운영과 관련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과 교육훈련사 업 등 추가 -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운영 수지개선	• 일부반영 - 교육훈련사업은 공기업의 사업 적용범위에 부적절 - 공사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사업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

입법 예고안	제출 의견		반영 여부
	제출자	의견	
③공사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자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윤예준 구수진 이양호 김상국 강한규 윤영삼	○제4호에 “마을버스운송사업, 일반택시운송사업” 추가 -대중교통수단을 모두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 ○제5호 삭제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적용 범위에 미해당, 공사설립 목적에 반함	· 일부 반영 -택시운송사업은 공사 설립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기존 택시운송사업자와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 반영
	부산교통공단 단노동조합	○사업범위급 후발 타 지하철공사 수준으로 맞추는 것이 바람직	· 반영
	부산광역시차시민연대	○광역교통제도에 관한 사업 추가 -양산선 고려	· 일부 반영 -목적(제1조)에 “부산광역권” 용어 추가
	강한규	○제2항 중 “시장의 승인”을 “시의회와 시장의 승인”으로 변경 -시장과 공사 사장간의 담합에 의한 자본잠식이나 독해설인사 예방	· 미반영 -지방공기업법 제54조의 규정에 명시된 사항으로 삭제
	윤예준 구수진 이양호 김상국	○공사 산하에 사업분야별 본부체제를 정관으로 규정토록 명시 -당분간은 사업부별로 본부 체계 필요	· 미반영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에 규정 불요
	강한규 윤예준 구수진 이양호 김상국 부산광역시차시민연대	○제3항 삭제 -인력의 최저고용 폐지 -정규고용보다 비정규직 고용을 도급 등으로 위장하여 불법하게 비정규직 양산	· 반영
제17조(운임의 징수·전정)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임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임을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강한규 부산교통공단 단노동조합	○운임 결정과 변경 시 “지하철이용시민위원회”의 의결과 시의회에도 신고토록 변경 -요금인상에 대한 시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미반영 -요금의 결정과 변경은 뚜렷한 명분과 필요성,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여론 수렴 이후 결정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의견수렴을 위하여 시의회 보고절차를 거쳐 시장실위원회인 물가대책위원회의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별도의 위원회 설치 불요

입법 예고안	제출 의견		반영 여부
	제출자	의견	
	윤예준 구수진 이양호 김상국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윤임결정 또는 변경 시 "시민경영감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시민참여	· 미반영 -사유는 위와 같음
	부산참여 자치시민 연대	○윤임을 조정할 때는 정기적 으로 윤임을 청함 -적정윤임 결정 자료 활용	· 미반영 -사유는 위와 같음
제19조(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담할 경비) ① 법 제71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경우 대행 사업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63조 제2항의 규 정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 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 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성철삼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강한규 윤예준 구수진 이양호 김상국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부산교통 공단노동 조합	○제1항에 "지하철요금에 반영 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 적자"를 추가 -'04.9.8 국가와 부산시간의 공동합의문 제5항에 의거 부산시는 자부재원으로 운영 적자를 해결해야하기 때문	· 미반영 -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은 공사 가 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 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부담 하여야 할 경비를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운영적자분 을 규정하여할 조항은 아님 -'04.9.8 국가와 부산시간의 공동합의문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철요금에 반영되지 못하여 발생하는 운영적자는 별도의 부채상환(해소) 계획 을 수립하여 처리되어야 할 사 항임
제21조(부채상환대행) 공 사는 부산교통공단법 폐지시 국가와 부산시 가 인수한 부채의 상환 업무를 대행한다.	강한규 윤예준 구수진 이양호 김상국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부산교통 공단노동 조합	○제21조 삭제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준 제7조의 규정 위반	· 일부반영 -중전 교통공단에서 수행하 고 있는 업무로 공사에서 대 행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 적이나, -"위탁할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조정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반영여부
	제출자	의견	
제24조(감독) ①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외 급여 및 퇴직금 등 보수에 관한 사항 3.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강한규 윤예준 구수진 이양호 김상국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부산교통공 단노동조합 부산교통 공단	○제2항 제1호와 제2호를 삭제 -근로기준법 위반 및 독립 재산제에 반함 -노동관계법에 저촉	- 반영 -제24조 삭제
제26조(재산의 무상사용)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사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부산교통 공단 사회경제산 업당판실	○시의 공유재산을 공사에서도 무상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반영 -제2항 신설
제27조(공무원의 파견 겸 임) 시장은 공사가 수행하 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공 무원을 공사에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강한규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부산교통 공단 부산교통공 단노동조합 윤영삼	○제27조 삭제 -제한 주장(윤영삼) -공사의 독립경영 훼손 우려(강한규, 민주노동당, 노조) -법 제75조의3과 중복규정 (부산교통공단)	- 반영 -지방공기업법 제75조의3의 규정과 중복
부칙 제2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공사의 최초 사업연도 예산은 공사설립 후 1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예산 편성 전에 지출된 경비는 공사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 된 것으로 본다.	강한규	○부칙 제2조 삭제 -지방공사설립운영에 관한 지침에 반함	- 일부반영 - 조례안 부칙 제5조(예산편성 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설립 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 도의 공사의 예산은 종전의 부산교통공단이 편성하여 부산 교통공단이 사회의 외적으로 확정 하되, 그 절차는 법 제65조 및 영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반영여부
	제출자	의견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제5호다목 "부산교통공단 예산보조에 관한 사항"을 "부산교통공사 소속부서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17조제1항중 "부동산"을 "부동산 및 채도차량"으로 하고, 제26조를 삭제한다.	세정담당관실	○ 제3조제2항 삭제 -부칙에서 타조례의 원문을 개정함은 부당	· 반영
	강한규 부산교통공단노동조합	[다음 사항 6건 조례에 추가] ○ 결산서 등의 게시·비치 등 -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2항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 자문위원회 설치 ○ 지하철이용위원회 ○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 비정규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비정규직노동자 중 대부분은 도급으로 위장하여 사용하는 노동자들과 할 것이므로 규제되어야 함 ○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무분별한 아웃소싱 등 도덕적 해이 우려 ○ 임원의 결격사유	· 미반영 -결산서 등의 게시·비치 등, 자문위원회 설치, 지하철이용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규칙, 정관 등으로 규정 가능함 또 타시도 경우 조례에 미규정 -직원에 대한 경과조치는 부산교통공단법폐지법을 부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부산교통공단의 이관 중에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은 가능한 자제함이 바람직하나, 신규사업의 중단 등을 조례로 규정함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위하여는 부적정함 -임원의 결격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반영여부
	제출자	의견	
	윤대준 구수진 이양호 김상국	[다음 사항 6권 조해에 추가] ○업무상황 공표 -지방공기업법 제46조제2항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함 ○시민안전자문위원회 설치 -안전의 중요성 강조 ○시민경영감독위원회 설치 -시민들이 공사경영에 주체적으로 참여 ○비정규직에 대한 경과조치 -비정규직노동자 들 대부분은 도급으로 위장하여 사용하는 노동자들이라 할 것이므로 구제되어야 함 ○전행 중인 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을 앞두고 무분별한 아웃소싱 등 도덕적 해이 우려 ○도시철도사업 이 외의 경과조치 -재정적, 행정적 지원	- 미반영 ○사유-위와 같거나 유사함
	강한규 서양수	[별도의 조해안 제출]	- 미반영 -기제출한 의견 대부분이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반영이 불가하며, 필요시 정관 또는 규정 등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임
	부산참여 자치시민 연대	○자문위원회설치규정 추가 -시민참여 필요	- 미반영 -필요 시 정관 등에서 규정 가능
	윤영삼	○공영공개에 관한 사항, 직자상태론 벗어날 자주 재원투입에 관한 사항 명시	- 미반영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되고 있으며 추가 필요시 정관 등에서 규정 가능함

입법예고안	제출의견		반영여부
	제출자	의견	
[기타사항]	민주노동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윤영삼 강한규 부산교통공 단노동조합	○공청회 개최요구 -신설법인 설치에 따른 이해관계자, 전문가, 시민의견 수렴 필요 -설명의 및 타당성 검토(즉히, 버스관련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전문기관 용역 등 미이행 -하계휴가 기간을 이용한 입법예고는 시민의 참여가 제한되는 시기상 문제이고 -조례안 내용을 시보에 게시하지 않고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함은 시민의 이용에 불편 등	· 미반영 -「부산교통공단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법인의 설립)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 1월 1일까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법인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설립타당성 검토 및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는 거치지 않아도 됨. -버스관련사업 및 교육훈련사업 등에 대하여는 입법예고 결과에 따라 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였음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부산시보에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및 의견제출방법 등을 게재하도록 하고, 시 홈페이지에 예고할 내용의 전문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오늘날 대부분의 시민들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행정정보를 얻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